

□ 추진배경

- '26.3월 합성수지원료의 가격이 30% 이상 인상되어 관련 제조업체의 원재료 부담*이 급증되어 중기부가 선제적 조사 착수

*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에 달해 원재료 가격 비중이 매우 큰 업종

□ 직권조사 개요

※ 법적근거 : 상생협력법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 (조사대상)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관련 주요 위탁기업 15개사

* 조사대상 위탁기업 : 식료품 제조사 5개사, 음료 제조사 5개사, 커피 프랜차이즈 5개사

- (조사내용)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이행 및 상생협력법 준수여부

- ① 서면조사('26.4.1. ~ 4.20.) : 약정서, 거래내역 등 사전 검토
- ② 현장조사('26.5.7. ~ 6.11.) : 범위만 의심, 서류제출 불성실, 거래 수탁기업 다수 등이 확인된 7개사를 조사(1개사 당 2~3일씩, 3~4인 1조)
- ③ 설문조사('26.5.22. ~ 6.12.) : 현장조사 대상 7개사의 수탁기업 대상으로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 조사

□ 조사 결과

< 법 위반 기업별 법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 >

기업명	법 위반사항	조치 내용
A사 (식료품 제조업, 중견기업)	약정서 미발급 2건 (법 제21조제1항 위반)	○ 과태료 : 1,000만원* ○ 개선요구(재발방지), 벌점(2점), 교육명령
B사 (식료품 제조업, 중견기업)	약정서 미발급 5건 (법 제21조제1항 위반)	
C사 (커피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약정서 미발급 3건 (법 제21조제1항 위반)	
D사 (커피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약정서 미발급 13건 (법 제21조제1항 위반)	

* 상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로 감경하나, 위반행위별 부과에 따라 누산하여 최대 1천만원 부과